

# 2026년도 블라인드 공개채용 국비계약직 (간호사)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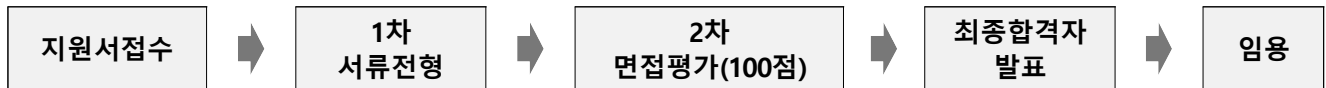
## 1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 선발직종(분야)별 응시자격(상세업무 내용 직무설명서 및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필독)

모집부문		모집 인원	응시자격 (해당사항 응시지원서에 필수 기재)	기타사항
구분	해당직무 (소속)			
국비 계약직	간호사 (감염병전문병원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 병원이상 근무 경력(임상 또는 기타 사업 관련 업무) 3년 이상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내용: 감염병전문병원 의료대응 체계 구축 사업 수행(상세내용 직무설명서 참고)</li> <li>-소속: 감염관리팀</li> <li>-근무기간: '26. 8. 3.~'26. 12. 31. (필요시 연장 가능)</li> <li>-근무시간: 주5일, 40시간</li> <li>-급여:월3,634,700원(세전, 기타 지급액 없음)</li> </ul>

- 가. 지원자는 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함( 면허증 및 자격증 취득예정자 지원불가)
- 나. 모집 전 직종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단,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다. 직무특성 및 병원특성상 야간(교대) 및 휴일근무 할 수 있음
- 라. 국비사업 참여(근무)기간은 동 사업의 사업기간 내 필요시 연장가능

## 2 전형방법 및 배점기준



- ※ 면접평가는 모집 구분에 따라 필요 시 1, 2차 평가로 나누어 진행 될 수 있음.
-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진행 함.(합격자만 개별통보)

## 3 지원서등록 및 전형일정

- 가. 지원서 등록기간: **2026. 6. 19.(금) ~ 2026. 7. 3.(금) 오전 10:00 마감**
- 나. 지원서 등록장소: 인재채용 홈페이지(<https://pnuyh.recruiter.co.kr>) 온라인으로 지원서 등록
- 다. 전형일정

구분	공 고	1차		2차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평가	합격자발표	
일정	'26. 6. 19.(금) ~'26. 7. 3.(금)	'26. 7. 6.(월)	'26. 7. 7.(화)	'26. 7. 10.(금)	'26. 7. 15.(수)	'26. 7. 24.(금)
장소	병원채용 홈페이지	인력개발팀	채용사이트 및 개별통보	개별통보	채용사이트 및 개별통보	채용사이트 및 개별통보

- ※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연락을 취함.

## 4      **우대사항**

대상	관련 근거	주요 내용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 가. (공통)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가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함
- 나. (공통)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하며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다.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선발인원이 최소 4인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다만, 응시인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라.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전형(서류, 필기, 실기 및 면접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함
- 마. 그 외 사항과 관련해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청 훈령)」을 준용하여 처리함

## 5      **합격자 결정(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및 18조)**

- 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서류전형을 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후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사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함
- 나. 면접시험 취득총점이 60점 이하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함. 또한 면접위원 제척사유 발생 시에는 제척된 면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함. 단, 면접위원이 3명 이하일 때는 최상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지 아니함.
- 다.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는 ①면접시험 총 합산 점수 우수자, ②서류전형 점수 우수자 ③내부 위원 면접점수 우수자 순으로 결정함.
- 라.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면접합격자 중 제출 서류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6**

**제출서류**

가. 서류 제출은 면접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지원서등록마감일까지 제출요망**

나. 제출서류

제출기일	제출서류
지원서등록 <b>마감일시까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li> <li>•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li> </ul>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2일 이내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재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허(자격)증 사본 1부.</b></li> <li>•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li> <li>•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입사지원서에 <b>입력한 교육과목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b>)</li> <li>• 경력사항 관련 증명서 1부.(입사지원서에 <b>입력한 경력사항에 관하여 제출하며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함.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b> )</li> <li>• 직업교육 및 기타교육 관련 이수(수료)증 1부.</li> <li>• 유효기간 내 공인어학성적관련 증명서 1부.</li> <li>• 주민등록초본 1부. (단, 남자의 경우 <b>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b>)</li> <li>• 통장사본 1부.(CMA 계좌 안됨)</li> <li>• 노인학대관련, 장애인학대관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li> <li>•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li> </ul>

※ 제출서류 미제출 및 허위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함

※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또는 미기재(ex 000000-2\*\*\*\*\*)

※ **서류제출방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재채용 홈페이지(<https://pnuyh.recruiter.co.kr>) 접속 → 입사지원 → 마이페이지 (공고명 선택,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 과제 제출(파일명은"수험번호\_성명", 압축 파일로 업로드)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반환 청구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단,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7**

**기타 사항**

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연령), 출신학교명(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적 조건(키·체중 등), 재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함.

다. **채용공고 일자가 같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

라. 지원서 작성 시 불성실 지원자(“ZZZ”, 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는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제5항에 따른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범죄전력조회 등 이상이 있는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사. 채용 불합격자 중 이의신청이 있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팀(055-360-1343)으로 문의 바람.

2026. 6. 19.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